

NIGT BRIEF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최선영 / 최고봉





하이라이트

-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6년 4월 21일에 시행령과 함께 본격 시행됨
- 동법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규정
- 특히, 「공정거래법」상 엄격히 제한되는 기업결합·공동행위에 대하여 심사 기간 단축, 예외적 허용 등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례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
- 또한, 석유화학산업의 범위(영 제2조)에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등 저탄소 원료 및 순환자원을 투입하는 업종을 포함시켜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의 범위를 확대·제도화함
-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법 제2조)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을 포함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사항(법 제11조)도 규정함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가속화될 전망

키워드

- 석유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사업재편, 탄소중립, 고부가 전환
- Petrochemical Industry, Special Act on the Petrochemical Industry, Business Restructuring, Carbon Neutrality, High Value-added Transition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배경

석유화학산업의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 구조 개편 도모

-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및 탄소중립 비용 증가 등 대내외 복합적인 위기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동 산업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경쟁력 회복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
-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석유화학 제품의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 탄소중립 전환 요구에 따른 비용 증가, 원자재 조달 및 최종 제품 판매에 관한 높은 대외 의존도¹⁾,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최근 위기에 직면하였음²⁾
- * 중국의 급격한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 상승 및 수출국 전환, 정유사들의 석유화학 사업 진출 가속화, 북미의 셰일 가스 기반 에테인분해시설(Ethane Cracking Center, ECC)의 원가 우위와 생산능력 증대 등³⁾

1) 최상원, 2025, 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제품별 분석, KDB 미래전략연구소, 2025.09.25., 23면.

2) 이관후, 2026,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의 전환점: 특별법 제정과 ‘현장-입법’연계 본격화, 입법조사처 Nars Brief 제137호, 2026.01.08.

3) 이관후, 2026, 위의 보고서.

-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약화 시 국가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고 장기적임⁴⁾

※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은 1960~70년대 국가 주도하에 울산 및 여수를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민간기업 주도로 충남 서산시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지역사회의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적 발전을 견인⁵⁾

• 석유화학산업의 자발적 노력⁶⁾과 함께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의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며, 2025년 12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

* 270~370만 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 감축, 고부가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의 노력 및 경쟁력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등⁶⁾

- 2025년 6월부터 3건의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의 대안(의안번호 2214590)으로 가결되었음 (2025년 12월 2일)

- 동법은 시행령과 함께 2026년 4월 21일에 시행되었으며, 현재 행정규칙 마련 등 법제 완성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

- 정부는 동법 시행 전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사례가 있으며*, 향후 설비 합리화에 따른 공급과잉 완화, 정유-석유화학 수직 계열화를 통한 운영효율 향상, 고부가 친환경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⁷⁾

* 정부는 2026년 2월 23일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이 참여하는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 2.1조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⁸⁾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의 주요 내용

• (전체 구성)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은 총 5장 및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특례 등 다양한 조치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표 1]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의 구성

장	조문	장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	제13조 고용 지원 제14조 지역경제 지원
제2장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제5조 세제 지원 제6조 재정 지원 등 제7조 규제 특례 등 추진 제8조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제9조 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제10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제11조 연구개발 지원 제12조 인력 양성 지원	제4장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제15조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16조 수입동향조사 등
		제5장 보칙	제17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유효기간 제3조 적용례

자료: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251호.

4) 김원익의원 대표 발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13909)

5) 고나영, 김성훈, 2020,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특성과 글로벌가치사슬 참여 구조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학회 제23권 제3호.

6) 산업통상부 (2025.08.20.),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민관이 함께 본격 시동”. 2026.07.27. 접속,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0824/view?mno=&pageIndex=13&rowPageC=5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7) 산업통상부 (2026.02.25.),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 금융·세제·원가 등 2.1조원 이상 지원 패키지 제공”, 2026.08.06. 접속,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535/view>

8) 연합뉴스 (2026.07.15.), “공정위, 석화재편 ‘대산 1호 프로젝트’ 조건부 승인 여부 승인”, 2026.08.06.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5077300002>

- (제1장)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의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를 규정하여 법률의 방향성과 적용 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제1조) 법률의 목적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 정하고 있음
 - (제2조)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 투입 원료로 바이오매스를 포함하고(제1호),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성의 요건을 포함하는 등(제2호 및 제3호) 기후위기 대응과 연계될 수 있는 개념적 기반을 마련함
 - * 석유화학산업,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고부가 전환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정함

[표 2]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의 주요 용어 정의

용어	관련 조문	정의
석유화학산업	제2조 제1호	석유·천연가스 또는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기초유분을 생산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합성수지·합성원료·합성고무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제2조 제2호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
고부가 전환	제2조 제3호	희소성·수익성·환경성 등이 높은 고부가 제품 생산 및 원가혁신 등을 통한 고부가화 등 기준에 따른 사업혁신 활동
석유화학사업자	제2조 제4호	석유화학사업을 영위하는 자

자료: 법률 제21251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4.21., 2025.12.30., 제정.

- (제2장)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 특례, 기업결합 신고 등 다양한 조치 시행
 - (제5조 및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화학 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한 세제 지원, 손비 처리, 자산재평가 등 특례 또는 그 외에 재정 및 금융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 (제7조) 기존의 규제 및 절차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규제 특례 도입
 - * 산업단지 개발, 생산시설 신설 및 증설 등 관련된 인허가 통합 및 간소화(제1호),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기준 규제 특례(제2호), 신기술 검증이나 평가 기준 미비에 대한 신속한 조치(제3호) 규정
 - (제8조) 정부는 사업재편⁹⁾ 심사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최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특례를 부여함
 - (제9조)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제40조)의 예외를 적용받아 일부 공동행위를 할 수 있음*
 - * 산업통상부장관은 ① 공급과잉, 수익성 악화, 경쟁력 저하 등 산업 위기 ② 자체적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없음 ③ 필요최소한의 공동행위가 필요함 ④ 공동행위 또는 참여 여부에 사업자 간의 부당한 차별이 없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공동행위 승인 가능함
 - ※ 부칙에 따르면 제8조와 제9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석유화학사업자가 행한 행위에도 소급 적용됨(제3조)
 - (제10조)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집단사업에너지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재편기간 동안에도 집단에너지의 공급(열 공급에 한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받을 수 있음
 - * 「집단사업에너지법」 제9조에 따르면 사업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집단에너지 공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나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아, 해당 조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 허가가 제한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됨
 - (제11조 및 제12조)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¹⁰⁾ 지원 법적 근거 규정

⁹⁾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소규모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설립 등을 말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조.

[표 3]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

관련 조문	연구개발 지원 사업
제11조 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
	시험설비, 평가시설 등 공용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활용 체계 구축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공공 인증·평가제도 도입 및 판로 지원
	산업계·학계·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 협업체계형 연구개발사업 지원
	고부가·탄소중립·친환경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자료: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251호

- (제3장)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제13조·제14조)
- (제4장) 석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해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제15조), 시장 변동 대응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량·가격 등 수입 동향 조사·분석 결과를 관련 기업에 제공 가능(제16조)
- (제5장) 관련 사업자의 보고 의무(제17조), 법에 따른 업무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공무원 의제를 정함(제18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석유화학산업,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다양한 특례 및 지원 규정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026년 4월 21일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

[표 4]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의 시행령 조문 구성

조문	내용	조문	내용
제1조	목적	제8조	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제2조	석유화학산업의 범위	제9조	공동행위 승인 신청 및 절차 등
제3조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제10조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 사항
제4조	고부가 전환	제11조	기술료의 감면
제5조	인허가 특례	제12조	고용 지원
제6조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제13조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7조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 특례	제14조	업무의 위탁

자료: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68호

- 시행령은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요 용어의 범위 및 판단기준을 마련했으며, △ 산업 자체의 탄소 감축과 △ 타 부문의 탄소중립과 연계한 고부가화라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및 경쟁력 제고 전략이 나타남
 - (제2조) 석유화학산업의 범위에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과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원료와 순환자원을 투입하는 사업도 지원범위에 포함
 - ※ 산업부는 2022년 제11차 표준산업분류 개정 시 석유화학 업종으로 저탄소 원료 순환자원을 투입하는 제조업의 분류 코드를 신설하는 등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 범위 확대를 추진하였으나¹⁾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음

10) 국내 석유화학 최대 산업단지인 울산은 세계 경기 악화 및 환경 규제 강화, 인력난으로 인한 성장 둔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과 산업현장의 위험성 및 열악함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황승만 (2026.02.04.), “[기고] 울산 석유화학, 교육이 희망을 만든다”, 2026.07.09. 접속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489>

11) 산업통상자원부 (2022.09.19.), “열분해유 생산 등에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화학 신산업 투자 촉진을 지원”, 2026.08.04. 접속,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66043/view>

- (제3조) 핵심전략기술을 크게 “고부가 전환 기술”,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행정고시 예고에 따르면 고부가 전환 기술에도 탄소중립 구현에 기여하고 고도화하는 다양한 소재기술들을 포함

※ 동 법은 정의 조항에서 고부가 전환의 개념에 환경성 향상을 포함하였으며(법 제2조 제3호), 시행령에서도 고부가 전환에 해당하는 활동 중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보전에 대한 기여”를 명시(영 제4조 제5호)

[표 5]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중 탄소중립 관련 주요 기술

분야	기술분야	기술명
고부가 전환	에너지 전환용 고기능성 화학소재 기술	고에너지밀도·고출력 이차전지용 전극 전해질 및 기능성 화학소재 기술
		전고체 전지용 고체전해질·복합 바인더 화학소재 기술
		AI 데이터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전지 안전성 및 수명 향상 열관리·봉지·밀봉 소재 기술
		수전해 수소 생산용 고효율 전극 전해질막 소재 기술
		액화수소 및 암모니아 저장·운송용 고기능성 단열·밀봉 화학소재 기술
	미래모빌리티용 고기능성 화학소재 기술	차세대 전력인프라용 고성능 절연·유전체 소재 기술
		자율주행·전기차 전장부품용 방열·절연 및 전자기파 차폐 화학소재 기술
		자율주행·전기차 경량화용 화학소재 기술
온실가스 감축	바이오·재활용 기반 원료전환 기술	전기차 타이어용 고내마모·저연비 탄성소재 기술
		바이오매스 기반 화학원료 및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기술
	석유화학공정 탈탄소화 기술	폐고분자 물리적·화학적 재활용 기반 순환 화학 원료 생산 기술
		무탄소연료 기반 석유화학 공정 전환 기술
		전기화 기반 석유화학 공정 전환 기술
	에너지 효율향상기술	석유화학 공정 부생물질 전환 기술
		석유화학 공정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자료: 산업통상부장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6.07.02.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사점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및 시행령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례적인 「공정거래법」 특례를 마련하고, 각종 절차 및 고용·지역경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함
 - 산업 현장의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의 구조적 개편을 위한 기업결합 특례와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적 승인 특례 등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산업단지 개발, 생산 공정 개선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고부가 가치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관련 기준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 관련 규제 유연화 및 제도 개선을 꾀함
 -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지방을 중심으로 집적화되어 발전해 온바, 사업재편 또는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위축과 지역 경기 침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특히,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및 시행령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원가·생산성 중심의 전통적 관점을 넘어 환경적 지속가능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정의하려는 정책적 전환을 시사함
 - 석유화학산업의 범위(영 제2조)에 저탄소 원료 및 순환자원을 활용한 업종을 포함시킨 것은, 석유화학산업을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제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녹색전환을 고려하여 산업 범위를 확대·제도화한 것을 의미
 - 산업 범위를 확장된 시각에서 재정의하여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포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개발 지원 근거에 따라 탈탄소화 기술개발도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동법이 지향하는 ‘고부가 전환’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보전에 대한 기여도 포함되어 있어, 통상적인 고부가가치화 전략과는 달리 친환경성이 하나의 경쟁력이자 부가가치 창출 요소로 인정됨을 의미

참고문헌

- 1) 최상원, 2025, 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제품별 분석, KDB 미래전략연구소, 2025.09.25.
- 2) 이관후, 2026,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의 전환점: 특별법 제정과 '현장-입법' 연계 본격화, 입법조사처 Nars Brief 제137호, 2026.01.08.
- 3) 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13909)
- 4) 고나영, 김성훈, 2020,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특성과 글로벌가치사슬 참여 구조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
- 5) 산업통상부 (2025.08.20.),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민관이 함께 본격 시동”. 2026.07.27. 접속,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0824/view?mno=&pageIndex=13&rowPageC=5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 5) 산업통상부 (2026.02.25.),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 금융·세제·원가 등 2.1조원 이상 지원 패키지 제공”, 2026.08.06. 접속,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535/view>
- 6) 연합뉴스 (2026.07.15.), “공정위, 석화재편 ‘대산 1호 프로젝트’ 조건부 승인 여부 승인”, 2026.08.06.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5077300002>
- 7) 황승만 (2026.02.04.), “[기고] 울산 석유화학, 교육이 희망을 만든다”, 2026.07.09. 접속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489>
- 8) 산업통상자원부 (2022.09.19.), “열분해유 생산 등에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화학 신산업 투자 촉진을 지원”, 2026.08.04. 접속,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66043/view>
- 9)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251호.
- 10)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68호.
- 11) 산업통상부장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6.07.02.
- 1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250호.
- 1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67호.

본 발간물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기본사업인 「(R2610101)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기후기술 활용 촉진 방안 연구」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NIGT BRIEF

본 NIGT BRIEF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포스트타워 14층
TEL 02)3393-3900 FAX 02)3393-3919~20 www.nigt.re.kr